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국회 보고 규정〉
■ 이춘석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6286호)

2026. 3.

외 교 통 일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개정안의 내용 및 취지	2
2. 관계 부처 의견	4
3. 개정안에 대한 검토	5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춘석의원 등 10인
2. 제안일자 : 2026년 2월 12일
3. 회부일자 : 2026년 2월 13일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가 남극 관련 연구활동 진흥에 관하여 5년 단위의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각각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남극 관련 연구활동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해서는 타 계획들과 달리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이 미비하여 국회가 해당 계획들을 확인 및 검토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정부가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확정할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남극 관련 연구활동 진흥 정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회의 정책 심의 기능을 내실화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5항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개정안의 내용 및 취지

개정안은 남극연구활동진흥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정부가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입법부로서 국회의 정책 심의 및 통제 기능을 강화하고, 정책 집행 결과에 대한 평가 및 향후 정책에 대한 방향 제시 등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1조(남극연구활동진흥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정부는 남극에 관한 연구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남극연구활동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남극연구활동의 추진 목표 2. 남극연구활동을 위한 연구재원 3. 남극관련 국가과학기술분야의 발전 방안 4. 남극환경보호 연구 5. 남극연구기관 및 연구인력의 육성·지원 6. 남극과학기지과 시설물의 설치·운영 및 인력 등의 지원 7. 남극연구를 위한 첨단연구장비의 개발	제21조(남극연구활동진흥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 ④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8. 그 밖에 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 정부는 기본계획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기본계획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남극연구활동의 진흥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점검·평가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u><신 설></u> ⑤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u>정부는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확정할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u>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2. 관계 부처 의견

가. 외교부¹⁾

개정안 취지에 공감하며, ‘보고’와 ‘제출’ 문구 관련 별도 의견 없음.

나. 기후에너지환경부²⁾

국가 행정계획의 국회 보고·제출과 관련된 타 입법례³⁾ 등을 고려할 때,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함.

보고와 제출의 자구 차이에 대한 의견은 별도 없음.

다. 해양수산부⁴⁾

개정안 취지에 공감하며, ‘보고’와 ‘제출’ 문구 관련 별도 의견 없음.

1) 외교부 국제법률국 국제법규과 (2026.3.3.)

2)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제협력관 국제환경개발협약팀 (2026.2.25.)

3) <행정계획에 대한 국회 보고·제출 입법례>

- (보고): 「탄소중립기본법」 상 국가 기본계획, 「에너지법」 상 에너지기본계획, 「과학기술기본법」 상 과학기술 기본계획

- (제출): 「국가재정법」 상 국가재정운용계획, 「항만법」 상 항만기본계획

4)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 해양정책관 해양개발과 (2026.2.25.)

3. 개정안에 대한 검토

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국회 보고 규정(안 제21조제5항 신설)

행정기관의 국회보고는 국민의 대표로 구성된 국회가 입법·재정·국정통제 등 헌법상 권한을 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하여 정부로 하여금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는 것으로서,

국회의 정부에 대한 견제·감시의 초석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기능을 함.

개정안은 동법이 현재 남극연구활동 진흥에 대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정부가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국회의 보고 규정 부재로 국회의 심의 기능 작동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보완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보임.

동법 제2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남극연구활동진흥기본계획은 2006년 5월 제1차 기본계획 수립 이후 최근에는 2022년 4월에 제2차 기본계획이 수립되었음.

<남극연구활동진흥기본계획 수립연월>

연번	제목	수립연월
1	제1차남극연구활동진흥기본계획(2007~2011)	2006.5.
2	제2차남극연구활동진흥기본계획(2012~2016)	2012.2.
3	제3차남극연구활동진흥기본계획(2017~2021)	2017.4.
4	제4차남극연구활동진흥기본계획(2022~2026)	2022.4.

(자료: 외교부 국제법률국 국제법규과, 2026.2.25.)

연도별 시행계획의 경우 최근 5개년 동안 아래와 같이 수립되었으며, 2026년도 시행계획은 현재 수립 중에 있음.

<최근 5개년 남극연구활동진흥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연월>

연번	제목	수립연월
1	2021년도 남극연구활동진흥 시행계획	2021.5.
2	2022년도 남극연구활동진흥 시행계획	2022.6.
3	2023년도 남극연구활동진흥 시행계획	2023.3.
4	2024년도 남극연구활동진흥 시행계획	2024.7.
5	2025년도 남극연구활동진흥 시행계획	2025.2.

(자료: 외교부 국제법률국 국제법규과, 2026.2.25.)

현행법에는 개정안과 같은 규정이 없기에, 국정감사 등과 같이 별도의 자료요구가 있지 않으면 국회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이 보고 및 제출되고 있지 않음.

또한,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등 다양한 현행법에도 이미 개정안과 같은 취지의 규정이 존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1조(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의 수립 등) ⑦ 위원회는 종합기본계획을 확정하거나 수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13조(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의 수립) ⑤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이하 “기본계획등”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본계획등의 주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이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까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개정안의 일부 문구에 대해 아래와 같이 검토할 필요가 있음.

첫째, 국회에 보고할 때에 보고를 받는 대상을 ‘국회’로 할 것인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로 할 것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원칙적으로 ‘국회 보고’는 본회의 보고를 의미하며 그 내용은 사회 전반을 규율하여 국회의원 전원이 보고받아야 할 사항임.

‘상임위원회 보고’는 특정 영역을 규율하는 사항으로서 해당 정책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함으로써 상임위원이 파악하도록 할 사항임.⁵⁾

구분	국회 보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
대상	국회의원 전원이 보고받아야 할 사항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전문성 또는 보고의 신속성이 요구되는 사항
개념	국회 본회의 보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전체회의 보고
비고	- 보고를 위한 별도의 본회의 의사 일정을 작성할 수 있으나, 본회의 성격상 보고서 제출에 갈음하는 경우가 많음. - 실무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별도의 의사일정으로 보고되는 경우도 많음.	-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도 있는 질의 가능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6조(감사 또는 조사 결과에 대한 처리)

③ 국회는 감사 또는 조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정도에 따라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징계조치, 제도개선, 예산조정 등 시정을 요구하고,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이송한다.

④ 정부 또는 해당 기관은 제3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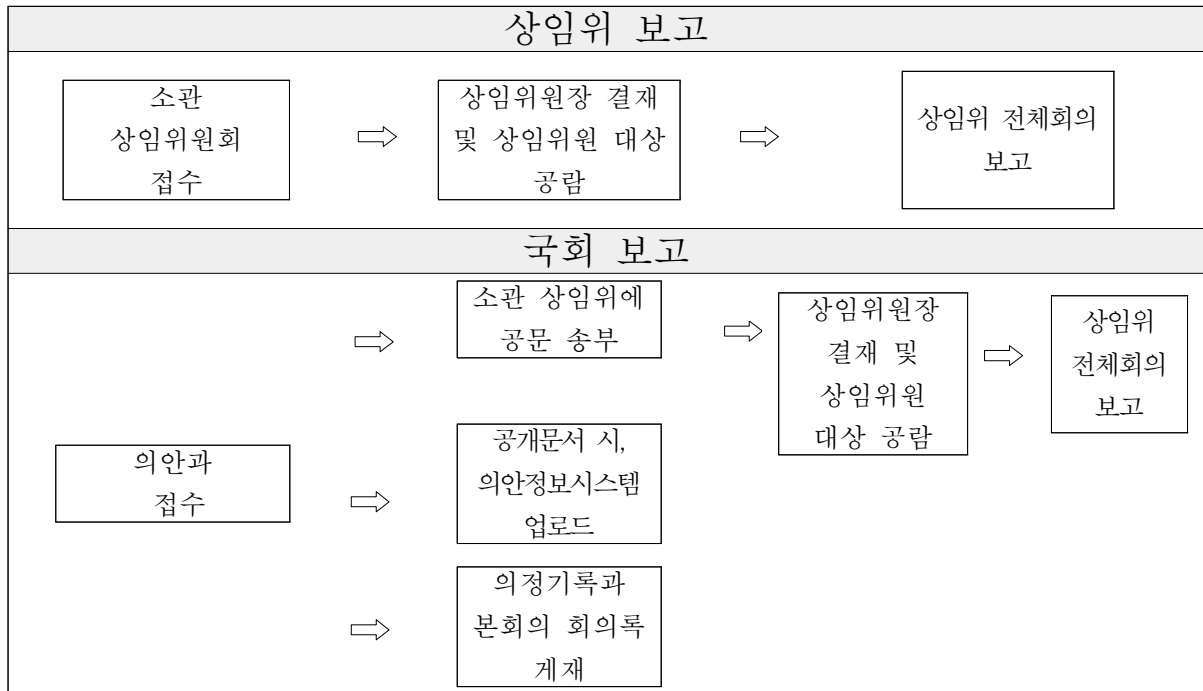
「건강검진기본법」

제11조(건강검진종합계획)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강검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5) 법제기준과 실제(2024 개정증보판), 국회사무처 법제실, p.724

<보고 대상에 따른 보고 실무 절차>



(자료: 국회사무처 의안과, 2026.3.3.)

현재 남극연구활동진흥기본계획은 해양수산부가 주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환경부 등과 공동으로 수립하는 범정부 차원의 기본계획이고, 시행계획 역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해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소관 분야의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남극연구활동 추진 목표와 내용
2. 주요 남극연구활동별 세부 추진계획
3. 주요 남극연구활동별 재원(財源) 확보 방안 등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해의 시행계획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제출하고,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에 관한 자료를 매년 2월 말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따라서 계획 수립의 주체가 여러 부처에 걸쳐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보고를 받는 대상을 ‘국회로’ 하는 것이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임.

둘째, 보고방식을 ‘보고’로 할지 ‘제출’로 할지 검토가 필요함.

보고방식에서 ‘보고’란 구두보고와 보고서 등의 제출을 모두 포함하는 반면, ‘제출’은 제출만을 의미하는 것이 일반적임⁶⁾.

보고	제출
구두보고와 보고서 등 제출 포함	제출만을 의미

다만, ‘보고’와 ‘제출’의 문구 차이에도 불구하고 실무적으로 ‘보고’로 규정된 경우에도 사실상 서면 제출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임.

동법과 같이 여러 부처가 함께 수립하는 범정부 차원의 기본계획인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의 종합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이 그 보고 방식을 ‘제출’이 아닌 ‘보고’로 규정하고 있음⁷⁾을 고려할 때,

개정안도 그 방식을 ‘보고’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법체계상 타당한 것으로 보임.

6) 법제기준과 실제(2024 개정증보판), 국회사무처 법제실, p.723

7) ‘보고’ 규정이나, 별도의 본회의 구두 보고 없이 의안과 서면제출로 실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국무조정실 개발협력총괄과, 2026.3.3.)

나. 부칙

법률의 시행일이란 제·개정된 법률이 현실적으로 효력을 가지고 존재하게 되는 상태에 이르게 되는 시기를 말함.

법률의 효력을 공포일부터 발생하도록 할 경우 국민은 법률의 시행에 따른 권리와 의무관계의 변화에 원만하게 대응할 수 없고, 법률의 집행기관은 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전 준비기간을 확보할 수 없어 상당한 혼란 국민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음.

그러나 동 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은 그 수립 주체가 국민이 아닌 정부이며,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내용이 아니고 법령의 정비를 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동 개정안은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시행일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참고로, 남극연구활동진흥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점검·평가 및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위한 실태조사 규정을 신설한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15787호 역시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하도록 규정한 바 있음.

다만, 개정안 시행 당시 이미 확정되어 시행 중인 계획에까지 보고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행정절차의 소급 적용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적용례를 신설하여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수립하거나 변

경하는' 계획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기존 계획이 수정⁸⁾될 때에도 국회의 통제권이 실질적으로 행사될 수 있도록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⁹⁾

문 의 처
02) 6788-5266

8)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남극연구활동진흥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⑤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남극연구활동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등)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9) 부칙 (수정의견)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계획 등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